



제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외교통일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 기본계획 수립 주기 변경 〉

■ 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5228호)

2026. 3.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전문위원 연 광 석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홍기원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 2025. 12. 12.
3. 회 부 일 : 2025. 12. 15.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체계적으로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과 달리 짧게 규정되어 있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임(제4조의3제1항).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br>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br>-----<br>-----<br>-----<br>-----<br>-----<br>----5년-----<br>----. |
| ② ~ ⑥ (생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br><br>부칙<br><br>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이라 함) 제4조의31)은 통일부장관이 북한이탈주민 보호

1) 제4조의3(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에 필요한 교육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자의 직업훈련, 고용촉진 및 고용유지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 및 생활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자의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6. 보호대상자의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정착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가 다른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보다 짧게 규정되어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시행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하려는 취지로 보임.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인권, 복지, 사회통합 등의 복합적 요소를 포괄하므로, 관련 정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방향에 따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단체나 기관 등의 예측가능성을 제고

---

7. 그 밖에 보호대상자의 보호, 정착지원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통일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 제22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성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통일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은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짐.

□ 반면, 정책이 실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 점검 및 변경의 필요성이 있고, 이를 통해 계획의 체계성, 성과의 달성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필요성도 있음. 또한, 경제·사회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실태를 보다 시의적절하게 파악하고 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이 보다 적시에 수립될 수 있도록 할 필요성도 있음.

□ 이와 같이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정책의 성격 및 탄력적 대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현행법은 중·장기적 관점의 기본계획 외에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탄력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은 중·장기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수혜 대상자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규정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제고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임.

참고로, 다른 법률에서도 정책의 성격 및 필요에 따라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3년 또는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일안보 분야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 입법례 〉

| 법률명                             | 조문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3년마다</u>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북한인권법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3년마다</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u>10년 이상으로</u>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제6조(군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국방부장관은 군보건의료발전계획을 <u>5년마다</u>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제7조(군인복무기본정책) ① 국방부장관은 군인복무기본정책(이하 “기본정책”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제6조(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u>5년마다</u> 「방위사업법」 제9조에 따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 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거쳐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 제5조(국방개혁기본계획의 수립) ③국방부장관은 국방개혁기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u>5년 단위의</u> 국방개혁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되, <u>매 5년의</u> 중간 및 기간 만료시점에 한미동맹 발전, 남북군사관계 변화추이 등 국내외 안보정세 및 국방개혁 추진 실적을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 제7조(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방부장관은 소음대책지역에 대하여 <u>5년마다</u>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다른 법률의 기본계획 수립 입법례 〉

| 법률명                         | 조문                                                                                                                                             |
|-----------------------------|------------------------------------------------------------------------------------------------------------------------------------------------|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제13조(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의 수립) ①정부는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조(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3년마다</u> 남북 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북한인권법                       | 제6조(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①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3년마다</u>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수립하여야 한다.               |
|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6조(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의 수립) ① 통일부장관은 평화경제 특구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계획기간을 <u>10년 이상으로</u> 하는 평화경제특별구역기본계획(이하 “평화경제특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5년마다</u>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기아동·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조(기본계획)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u>3년마다</u>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
| 건강가정 기본법                    | 제15조(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고용정책 기본법                    | 제8조(고용정책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u>5년마다</u> 국가의 고용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 공공외교법                       | 제6조(공공외교 기본계획의 수립) ① 외교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공공외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마다</u> 수립하여야 한다. |

- 이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기본계획 수립의 적절한 주기를 결정하는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과 해당 정책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결정할 사항으로보임.
-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성 있는 정책 추진력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여 정책의 예측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267 |